

##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항공안전법」 개정(법률 제18566호, 2022. 12. 08. 시행)으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감독 업무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, 사고 발생이 잦은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대신 그 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서류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규제를 완화하며,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‘2024년 10월 31일’에서 ‘2027년 10월 31일’로 연장하고자 함.

## 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항공안전법령, 항공사업법령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##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 훈령안

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48조”를 “제50조”로, “항공레저스포츠사업,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”을 “항공레저스포츠사업”으로 한다.

제2조 제7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8호 중 “제7호”를 “제6호”로 하고, “항공레저스포츠,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”을 “항공레저스포츠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 중 “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”를 “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”로 하고, “서류 또는 현장점검을 번갈아 실시”를 “서류 또는 현장점검 실시”로 하고, “다만,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는 월 1회 이상 표본점검”을 삭제한다.

제8조 중 “제4호”를 “제3호의3”으로 한다.

제20조 중 “2024년 10월 31일”을 “2027년 10월 31일”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항공안전법」 제108조부터 제132조까지, 「항공사업법」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등에 따라 <u>항공레저스포츠사업,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</u> 및 비영리목적의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7. "<u>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</u>"이란 <u>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.</u></p> <p>8. "<u>항공레저스포츠등</u>"이란 제5호부터 <u>제7호까지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,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</u>을 말한다.</p> <p>9. (생략)</p> <p>제6조(점검활동 등) ① (생략)</p> <p>1. 사업자 점검 : 모든 <u>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및 초경량비행장치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<u>제50조</u>----- -----<u>항공레저스포츠사업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1. ~ 6. (현행과 같음) <u>&lt;삭 제&gt;</u>  8. ----- -----<u>제6호</u>-----<u>항공레저스포츠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</u>----- -----.</p> <p>9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점검활동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<u>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</u>-----</p>

사용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는 전수점검(서류 또는 현장점검을 번갈아 실시). 다만,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는 초경량 비행장치사용사업자는 월 1회 이상 표본점검

2. (생략)

② ~ ③ (생략)

제8조(점검표 등) 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점검 시행 시 점검대상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.

제20조(유효기간) 이 훈령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-----  
-----(서류 또는 현장  
점검을 실시). <단서 삭제>

2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점검표 등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제3호의3-----  
-----.

제20조(유효기간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2027년 10월 31일-----  
-----.